

舊韓末 日帝의 葉錢整理와 韓國民의 均稅運動

金 惠 貞

I. 머리말

II. 日帝의 葉錢整理

III. 韓國民의 均稅運動

IV. 맺음말

I. 머리말

乙巳條約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의 하나가 재정과 관련된 것이다. 이미 일본은 제 1차 韓日協約을 강요하여 소위 顧問政治를 실시하면서 일본인 財政顧問을 설치한 바 있었다. 이 때 이 재정고문은 貨幣整理라는 명목 아래, 일본화폐를 통용케 하여 일본의 자본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닦은 것이다.¹⁾

1905년 6월 1일부터 실시된 貨幣整理事業은 한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²⁾ 다시 말해서 일본은 新·舊貨의 교환을 이용하여 한국민의 화폐재산을 수탈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화폐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다.³⁾ 특히 白銅貨整理에 따른 문제점은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백동화와 함께 진행된 葉錢整理事業은 한국민이 크게 저항하

1) 趙殘瀟,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大旺社, 1977), pp. 217~219 참조.

2) 日帝의 「貨幣整理事業」은 1905년 1월 18일 勅令 제 2호로서 발표된 「貨幣條例實施에 관한 件」을 효시로 하여 1909년까지 실시되었던 일련의 정책, (즉 한국의 貨幣制度를 日本의 지배 아래 완전히 종속시키는)을 의미한다. 「貨幣條例實施에 관한 件」은 同年 6월 1일부터 실시되었으며, 舊貨幣의 정리는 7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3) 「貨幣整理事業」에 관한 論文들로는 다음의 것들이 참조된다. 四方博, 「朝鮮に於ける近代資本主義の成立過程」, 『朝鮮社會經濟史研究』(京城帝國大學法文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별다른 관심을 모으지 못했다.⁴⁾ 당시의 엽전 유통규모와 더불어 한국민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화가 엽전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없이 화폐정리사업의 본질과 더불어 한국민의 동태는 결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믿어진다.

본고에서, 엽전정리의 실태와 관련하여 均稅運動에 대하여 고찰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⁵⁾ 균세운동은 엽전이 통용되는 지방의 토지세(結稅額)를 백동화통용지방의 그것과 동등하게 납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운동이다. 이는 납세거부운동으로까지 발전하면서 마침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은 일본의 경제침략을 가능케 하였던 화폐정리사업의 실태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고, 나아가 이같은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한국민의 저항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또한 당시 화폐 경제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하리라고 여겨진다.

學會, 1933); 姜德相, 「朝鮮貨幣整理事業に關する研究ノイト」, 『駁台史學』 17, 1965; 金俊輔, 「開港期 外來通貨와 「인프레손」機構」, 『韓國史研究』 7, 1972; 趙瓊濬, 「貨幣改革과 金融恐慌」,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大旺社, 1977); 李漢九, 「開港後 近代의 貨幣改革의 顛末과 歷史의 性格」(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0); 金榮院, 「韓末貨幣整理와 民族資本의 受難」, 『檀國大學校 大學院 學術論叢』 6, 1982. 이 외에도 다수의 논저들이 있다.

- 4) 이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기왕의 研究들이 주로 日本側 史料에 의존하고 한국측 사료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또한 별 무리없이 진행된 白銅貨의 정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註 3)에 소개된 대부분의 논저들도 주로 白銅貨의 정리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본의 화폐정리사업의 주요 대상은 白銅貨라고 규정짓고 있다.
- 5) “葉錢整理”는 日本의 貨幣整理事業의 하나였던 葉錢의 정리에 주목하여 붙인 이름이다. 예컨대 “白銅貨整理”란 표현과 동등한 개념이다. 한편 이때의 ‘整理’란 개념은 ‘回收’ 다시 말해서 거두어 들인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II. 日帝의 葉錢整理

1904년 2월 10일 露日戰爭이 일어나자 일본은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한일의정서를 체결했고, 그 해 8월 22일에는 다시 제 2차 한일협약을 맺어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1904년 9월 3일에 일본 大藏省 主稅局長인 目賀田種太郎이 한국재정고문으로 파견되어 한국정부의 재정권을 그가 관할하게 되었다.⁶⁾

그 후 目賀田는 재정은 물론 화폐·금융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각종 경제문제를 관장하였다. 우선 한국의 재정실태를 조사하여 國庫·會計制度 개편에 착수하였고, 다음에는 화폐정리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중 화폐정리사업은,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식민지 경제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일련의 정책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수행되었다.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은 일본의 화폐를 한국에서 자유롭게 유통시키려는 것이다.⁷⁾

이를 위하여 目賀田는 1905년 1월 18일에 勅令 제 2호 「貨幣條例 실시에 관한 件」을 발표하여 그 해 6월 1일부터 이를 실시하였으며 그 사무를 第一銀行이 담당케 하였다.⁸⁾ 이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서 유통되는 화폐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 정리의 대상인 舊貨

-
- 6) 目賀田의 임무와, 그의 財政改革을 다룬 논문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田中愼一, 「韓國財政整理に於ける徵稅制度改革について」, 『社會經濟史學』 39-4, 1974; 羽島敬彦, 「1904~1907年 目賀田改革—財正改革を中心に—」, 『近代朝鮮の社會と思想』(未來社, 1981); 黃夏鉉, 「日帝의 對韓植民地支配構告의 形成過程—目賀田改革을 中心으로」, 『東洋學』 12, 1982.
- 7) 目賀田이 제시한 貨幣整理事業의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貨幣의 기초 및 發行貨幣을 완전히 日本과 동일하게 할 것. 2) 韓國貨幣制度和 동일한 日本貨幣의 流通을 인정할 것. 3) 本位貨 및 兌換卷은 日本의 그것을 사용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日本兌換卷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정부의 감독 및 보증하는 銀行卷을 사용할 것. 4) 補助貨幣는 모두 한국정부가 발행할 것 등이다. 澁澤榮一 『韓國貨幣整理報告書』(第一銀行, 1909) p. 23 참조.
- 8) 『韓國近代法令資料集』 4,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72) p. 2, 勅令 제 2호. 「貨幣條例實施에 관한 件」(이하 『法令資料集』으로 略함)

(韓貨)는 白銅貨·葉錢·舊銀貨·舊銅貨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통량이 많은 것이 바로 白銅貨와 葉錢(常平通寶)이므로 이것들이 화폐정리의 주요 대상에 올랐다.⁹⁾

이러한 화폐들은 유통지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수록한 「葉錢·白銅貨流通地方色分圖」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¹⁰⁾

이 도표에 따르면 백동화가 유통되는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京畿道·江原道·忠清道·黃海道·平安道 지역이고, 엽전이 유통되는 지역은 慶尙道·全羅道·咸鏡道·濟州 등지였다. 다만 全羅北道와 江原道の 일부지역은 백동화와 엽전이 함께 유통되고 있었다.¹¹⁾ 요컨대 엽전이 유통되었던 지역은 백동화 못지 않게 매우 광범위했던 것이다.¹²⁾

화폐정리사업을 위하여 目賀田는 1905년 1월 18일에 내린 勅令 제 4호와, 그 해 4월 3일의 訓令, 그리고 6월 8일의 訓令, 6월 24일의 部令 제 1호 및 제 2호를 통하여 新·舊貨幣의 交換 및 回收에 관한 실시 요령을 정하였다. 그의 입장은 백동화와 엽전의 정리 방법에 대하여 각기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¹³⁾

9) 당시 백동화 유통액은 관주전 1700萬元에 사주전 600萬元으로 모두 2300萬元에 달하여 통화량의 약 2分之1을 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엽전의 유통액은 확실하지 않으나 약 1300萬元으로 추정하고 있다. 澁澤榮一, 前掲書 p.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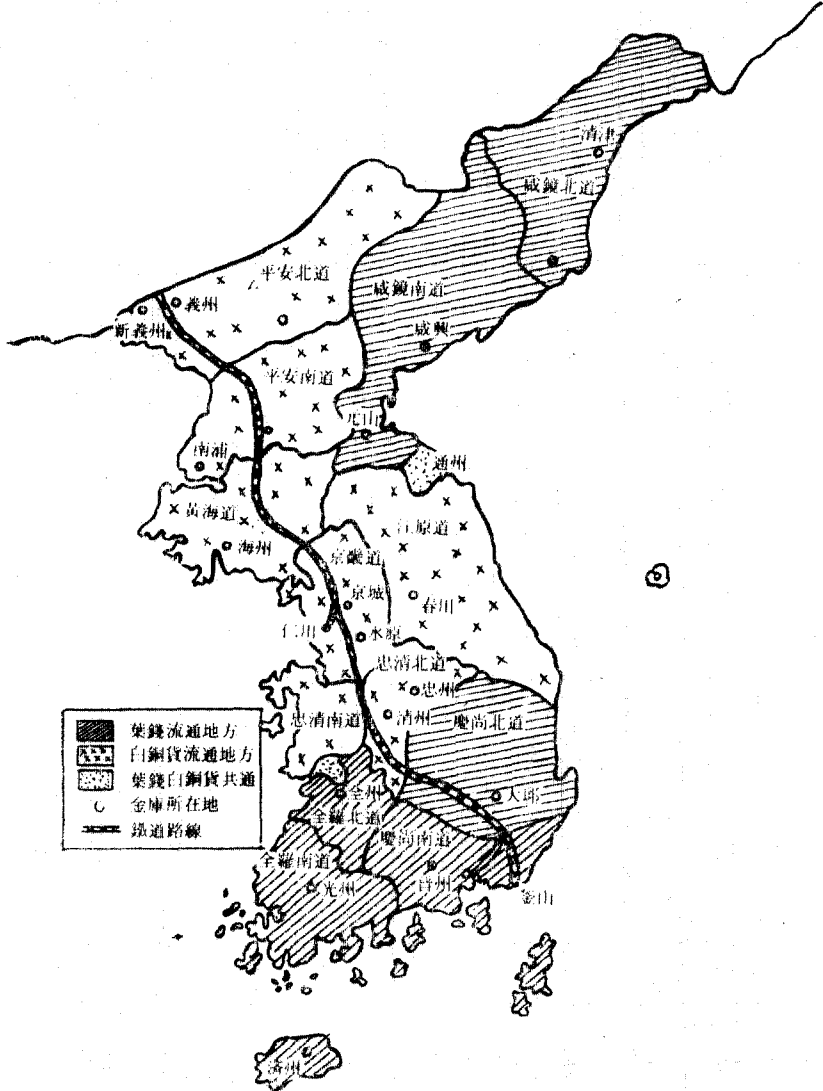
10) 澁澤榮一, 前掲書, p.13 참조. 澁澤榮一은 일본 경제계의 거물로서 당시는 第一銀行 頭取를 지냈다.

11) 그러므로 당시 한국의 화폐유통 상황은 크게 白銅貨通用地方과 葉錢通用地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木村光彦·浦長瀬, 「開港後朝鮮の貨幣と物價」, 『社會經濟史學』53-5, 1987에 의하면 백동화와 엽전이 유통되는 지역의 차이를 중앙집권력의 강약 내지는 유무로 이해하고 있다.

12) 註 9)에서도 보이듯이 葉錢 유통액은 白銅貨에 비하여 그 양이 적었지만 통용되는 지역은 백동화통용지역 못지 않게 넓었다. 때문에 그 整理의 중요성은 매우 높았다.

13) 黃夏鉉, 前掲論文 참조. 그리고 백동화와 엽전의 정리에 대해서는 각각 趙職澹, 前掲書, pp.217~219와 李碩崙, 『韓國貨幣金融史研究』(博英社, 1971), pp.143~149가 참조된다.

〈圖-1〉 葉錢 및 白銅貨 流通圖



우선 백동화의 정리는 주로 교환에 의하여 단시일 내에 회수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다시 말해서 1905년 6월 24일에 내린 「舊白銅貨交換에 관한件」에 의하면, 白銅貨는 모두 貨幣鑑定役이 감정하도록 하고, 甲·乙·丙으로 그 등급을 매겨 교환토록 한 것이다. 이처럼 교환에 의한 단기적인 회수책을 실시한 것은, 그 당시 「白銅貨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혼란이 야기되자 한국정부 내에서도 이미 그 시정책을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⁴⁾

한편 엽전의 경우는 白銅貨整理와 그 사정이 매우 달랐다. 엽전의 정리는 남부에 의한 長期的인 회수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엽전은 위조된 것 없이 모두 자체의 금속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장기간 통용되더라도 유통계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둘째, 엽전의 가치를 한국민이 크게 신뢰했으므로 교환이나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한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이를 무리하게 강요하면 民心の 동요를 가져올 우려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엽전의 정리는 단기적인 회수방법을 피하고 남부에 의해 장기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던 것이다.¹⁵⁾ 그러나 이러한 엽전 회수 방침은 곧 바뀌어졌다. 실제로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방법을 동원하여 급진적이며 반강제적인 방식으로 엽전을 회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日賀田는 엽전의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換率을 인상하고, 이어 이것을 結稅의 징수에 교묘히 적용·시행하려고까지 한 것이다. 그 당시 納稅條目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결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貨

14) 1902년 한국 정부는 「白銅貨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金本位制'를 원칙으로 하는 「光武 5년의 貨幣條例」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露日戰爭의 발발로 그 실시를 보지 못하였다. 본고에서 논의되는 光武 9년 (1905)의 貨幣條例는 바로 이를 기초로 한 것이다. 李碩崙, 前掲書, pp. 104~105 참조.

15) 李碩崙, 『韓國貨幣金融史研究』(博英社, 1984), pp. 397~398 참조. 그러므로 貨幣整理에 관한 法令의 대부분이 白銅貨整理가 주요 목표인 것처럼 표방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둔 때문이라 생각된다.

幣條例」가 공포되기 이전의 전국 결세는 1902년부터 1결당 80兩을 정액으로 규정되어 왔다.¹⁶⁾ 이리하여 貨幣條例가 공포되자 1905년 1월 18일 字의 勅令 제 4호 「舊貨幣訂期交換에 관한 件」第2條에 의거하여, 舊貨 10兩은 新貨로 1圓에 해당되었다.¹⁷⁾ 그러므로 1905년 1월 18일 이후부터 한국의 결세는 舊貨로 납부할 경우는 80兩이었고, 新貨로 납부할 경우는 8圓이 된 것이다.¹⁸⁾ 따라서 舊貨에 해당하는 葉錢結稅額은 당연히 80兩이어야 했다.

그러나 葉錢정리가 실시되기 직전인 1905년 6월 24일에는, 葉錢으로 납부할 경우에 대한 새로운 法令이 발표되었다. 즉 「舊貨로서 政府의 收納에 充할 境遇의 處理에 관한 件」第7條가 그것이다. 여기에는

葉錢으로서 國庫金の 納付에 充하는 者 有할 時는 壹箇에 對하여 壹厘五毛의 比例로 受納한 後에 立即 即貨幣整理部에서 新貨에 交換하는 者로 함¹⁹⁾

이라 하여, 葉錢으로 납부할 경우에 국한하여, 葉錢 1개는 新貨 1厘 5毛의 가치로서 평가·수납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전의 葉錢 1개가 1厘였던 것을 이제는 1厘 5毛로 換率을 인상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葉錢의 화폐가치는 결상됨을 뜻한다는 것이 된다.²⁰⁾

이처럼 葉錢의 換率을 인상할 경우, 葉錢으로 결세를 낸다면 당연히 그 액수는 전보다 줄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²¹⁾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

16) 이에 대해서는 『高宗太皇帝實錄』 42, p. 63; 黃夏鉉, 前掲論文, p. 31을 참조할 수 있다.

17) 條例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舊貨 銀 10兩은 新貨 金 壹圓에 相當한다.' 『法令資料集』 4, p. 2 勅令 제 2호 「貨幣條例實施에 관한 件」 참조. 여기에 보이는 舊貨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韓貨 즉, 白銅貨·葉錢·舊銀貨·舊銅貨를 말한다.

18) 邊昇基, 『晦山集』(高大 景和 D₁ A 1370), 卷 9, 「均稅顛末」에 의하면 '國稅則 新舊貨同爲八十兩(八圓)'이라 있는 것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 『法令資料集』 4, pp. 293~294. 度支部訓令, 「舊貨로서 政府의 收納에 充할 境遇의 處理에 관한 件」 참조.

20) 註 14)의 勅令에서 舊貨 10兩은 新貨 1圓이라는 것은, 葉錢 1箇 당 新貨 1厘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이訓令이 내린 직후 엽전통용지역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많은 물의가 빚어졌다. 『皇城新聞』1906년 4월 4일字의 雜報「善山民擾」를 보면,

昨多에 該郡結錢은 葉錢이면 八十兩을 納하고 紙貨면 十二圓을 納하는 것이 度支部原定規則인되 愚民이 誤解하고 各郡에 民擾을 頻繁하야 紙貨十二圓이면 八十兩으로 納하는 것이 抑鬱하야 二十兩을 減定하야 달라고(下略)²²⁾

라 하여, 엽전의 환율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善山郡의 엽전결세액은 그대로 80兩으로 고정되었고, 가치가 절하된 신화로 낼 경우에는 12圓으로, 오히려 4圓을 더 내야 했으므로 시위가 일어났던 것이다.²³⁾

이러한 환율 조작은 『皇城新聞』1907년 2월 9일字의 「寄書」에서도 확인된다.

(上略) 作年(1905) 九月 二十九日에 葉錢通用地方에 納稅하는 件을 度支部에서 發訓하기를 新貨로 納稅할 境遇에는 每一結에 十二圓으로 納入케 하라고 하야 此訓이 編入於稅規摘要하야 稅務官과 稅務主事가 一冊式 携帶하얏거늘(下略)

- 21) 당시의 本位貨幣은 新貨였으며 전국적인 結稅額은 8圓이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러므로 위의 조항에 따라 本位貨幣인 新貨 8圓을 기준으로 換率 計算을 하면 다음과 같다.

貨幣整理	前	後	
換 率	1	1.5	80 ; 8 = 1.5Y ; 8
葉 錢	80兩	Y	12Y = 640
新 貨	8圓	8圓	Y = 53.33

즉, 엽전의 결세액은 약 53兩 가량이 된다.

- 22) 「1905년 貨幣條例」의 공포 이후, 新貨의 貨幣 단위는 '圓'으로 통일되었다. 즉 「貨幣條例」 제 2조에서 '金貨幣의 純金量目은 二分으로서 價格의 單位로 삼고 이를 圓이라 칭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日本貨幣 단위인 '圓'도 함께 혼용하고 있었다. 이후 본고에서는 新貨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圓'으로 표기하였다.
- 23) 엄격히 말하자면 新貨結稅額이 12圓이라는 것은 인상된 것이 아니다. 葉錢의 換率이 1.5(1厘5毛)로 인상되었을 경우, 葉錢 80兩을 新貨로 계산하면 $(80 \times 1.5 = 120)$ 12圓이 된다. 즉 환율 계산상으로는 맞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結稅의 기준은 언급한 바와 같이 新貨 8圓이었다. 즉 葉錢 80兩에 맞추어 新貨結稅額을 정할 것이 아니라 新貨 8圓에 기준하여 계산하여야 맞는 것이다.

여기에서 1905년 6월 29일에 度支部에서 훈령을 내린 「葉錢通用地方에 納稅하는 件」은 바로 앞서 지적한 법령을 말한다고 생각된다. 이 법령에 준거하여 신화로 납부할 경우는 12圓으로 納入하게 하였다. 요컨대 이와 같은 결세액 책정은 엽전 80兩을 바뀐 환율로 계산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화결세액만 더 올려받은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상도 지방의 “저울에 속고 目賀田에 속았다”는 구전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²⁴⁾

이렇듯 엽전의 환율을 조작하여 신화결세액만 50% 인상한 目賀田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의 의도는 바로, 결세를 신화보다는 엽전으로 징수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엽전결세액을 그대로 두고 신화결세액을 인상하면, 엽전통용지방민들은 자연히 엽전 80兩으로 결세를 납부할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目賀田는 신화로 결세를 징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단지 4圓을 인상하여 엽전 80兩으로 납부하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요컨대 그의 구상은 엽전통용지역에서 한 국민이 엽전으로 납부하지 않을 때 신화로 12圓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엽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있었다. 결국 엽전통용지방에서 신화로 결세를 납부한다면 12圓이 되므로 백동화통용지방의 8圓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²⁵⁾

더우기 目賀田는 위와 같이 환율을 조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제적인 방법을 써서 엽전을 징수하려 하였다. 그 하나가 바로 신화로 결세를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皇城新聞』 1906년 4월 6일字的 「鷄郡鶴立」에서

湖南嶺南四道에 百餘郡守와 四觀察使가 紙貨葉錢加計取剩之事로 壓制結民하여 勒擄葉錢하고 許民新貨納稅하는 者는 未一見人이더니 (下略)

24) 이 口傳은 東亞大學校 史學科 大學院에 재학중인 白富欽氏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

25) 백동화통용지방의 신화결세액이 8圓이었다는 근거 사료는 本文 III章에서 다수 찾아진다.

이라 하였듯이, 慶尙·全羅道の 100여 군수와 4道の 관찰사는 모두 신화로의 납부를 허락하지 않고, 오직 엽전만을 강제로 징수한데서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엽전이 통용되던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皇城新聞』 1906년 4월 11일 字의 「錢幣辭職」을 보면,

咸悅郡守 權泰容氏가 該郡結稅收刷時에 人民은 白錢으로 上納코져 亨고 度支部에서는 用葉地方이라 亨야 郡部間에 葛藤이 生ᄃᆞᆫ 慮가 有亨야 權郡守가 度支部에 前往亨야 葉白의 事由를 備陳亨되 終不聽從亨고 一向收葉亨라亨는 故로 權氏가 內部에 辭職請願書를 提呈亨앗더라.

고 하여, 백동화를 사용하던 全北 咸悅郡民들에게까지 백동화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엽전으로만 납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²⁶⁾

요컨대 目賀田의 권한아래 있던 度支部는 엽전통용지방의 각 관찰사와 군수들로 하여금 엽전을 강제로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백동화가 통용되는 군에까지 이를 적용하여 엽전만으로 징수하는 등 엽전의 회수에 주력하였다.

그렇다면 目賀田가 엽전의 회수과정에서 이처럼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전환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방침을 바꾼 이면에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고 믿는다. 한마디로 엽전의 강제적이고 급진적인 회수는 엽전의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銅의 함유량이 높은 엽전은, 그 당시 국제적인 銅의 시가가 치솟자 이를 수출하였을 경우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²⁷⁾ 더우기 한국의 통치자금을 한국 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엽전의 수출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하면서 이것은 실로 큰 매력을 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皇

26) 全羅北道에 속해 있는 礪山·益山·珍山·高山·玉溝·區皮·咸稅은 葉錢統用地域임에도 불구하고 白銅貨가 통용되어 ‘用銅七郡’이라 불리워졌다. 이 같은 사실은 『晦山集』 卷 9, 「均稅顛末」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咸悅郡民들이 白銅貨로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27) 李碩崙, 前掲書, pp. 397~398 참조.

城新聞』1907년 4월 7일자의 「葉錢의 現況及整理」 제 2항에서

葉錢은 近來其流通額이 顯著히 減少하고 特히 昨年末에 銅時價가 騰貴호 以來로 海外에 輸出된 者 釜山港에만 欸야도 略四十萬元에 達호는디 (中略)

라 하여, 1906년 末 경에는 銅의 巿가가 상승하여 해외에 수출된 葉錢의 액수는 부산항에만 하여도 약 40萬圓에 달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잘 알 수 있다. 화폐정리 이전의 葉錢 유통액이 약 650萬圓으로 추정된다는 사실과 함께 부산항을 제외한 다른 항구에서도 수출된 물동량을 고려할 경우, 그 액수는 결코 적지 않았다고 믿어진다.²⁸⁾ 따라서 目賀田가 葉錢 회수에 있어, 원래 그가 세운 원칙을 바꾸어 강제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目賀田로 하여금 葉錢의 징수를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시행할 필요를 느끼게 하였다. 「管稅官官制」를 실시하고 각 군에 稅務主事를 파견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1906년 9월 24일 勅令 제 54호로 발표된 「管稅官官制」는 度支部大臣의 관할하에, 稅務監·稅務官·稅務主事 등을 두어 징수사무를 담당케 하는 제도이다.²⁹⁾ 稅務監은 各道에 설치하고 道內의 중요지역에는 稅務官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그 하부기관으로서 稅務主事를 각 군에 파견하여 징수사무를 담당케 하였다. 이 당시 지방에 파견된 세무관리의 수는 稅務監 13명, 稅務官 36명, 稅務主事가 144명이었다.³⁰⁾

28) 澁澤榮一, 前掲書. pp. 137~139 참조. 이에 의하면 부산을 비롯하여 인천·원산·목포·진남포·군산·마산·성진 등의 항구에서 다량의 葉錢이 수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9) 『法令資料集』 5, pp. 193~194. 勅令 제 54호 「管稅官官制」참조. 그리고 管稅官官制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한 논고로는 李潤相, 「日帝에 의한 植民地 財政의 形成過程—1894~1910년의 歲入構造와 徵收機構를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14, 1986, pp. 321~322를 참조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管稅官官制」라는 새로운 징세기구를 설치한 근본의도는 한국 고유의 징세체제를 파괴하고 日本의 식민지 수탈을 더욱 강행하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종래 징수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府尹官·郡守層과 吏胥·鄉任層을 배제하는 데에도 그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한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서, 세무주사를 파견하여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염전을 징수한 것이다.³⁰⁾ 이러한 사실은 『皇城新聞』 1907년 1월 7일字的 「稅務通信」을 보면,

慶尙北道 星州郡各面長이 至書호되 稅務官과 稅務主事가 紙貨와 舊貨를 並皆不受호고 但以 葉錢으로 收擄호다 호얏더니 (下略)

라 하여, 염전통용지방에 파견된 세무주사들이 염전을 제외한 韓貨의 납부를 일체 허락하지 않은 사실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된다. 요컨대 세무주사들은 염전만을 결세로 거두어들인 것이다.

그 결과 目賀田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 같다. 『皇城新聞』 1907년 2월 8일字的 「稅官成績」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管稅官官制頒佈後 昨年十一月中頃에 各稅務官이 赴任호야 徵收를 開始以來로 本年十二月二日까지 金庫에 收納호는 金額이 總計而四十一萬餘圓인디 (中略) 然即 徵稅制度改正의 本意가 漸次 人民에게 知悉된 結果에 不外호고 其成績이 頗히 良好호다더라.

고 하여,各地에 파견된 稅務官들이 징수 사무를 개시한 이래 年末의 징수 실적이 매우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目賀田의 관심은 작별하였다. 『皇城新聞』 1906년 10월 2일字的 「稅務保薦」이라는 기사에서

度支部에서 稅務主事 一百六十名을 試取호야 各郡에 派送호는 터인디 目賀田 財政顧問에게 試驗을 經호는 後에 叙任호고 保薦을 勳賞호는 者로 受호다더라.

라고 보도하듯이, 세무주사들이 目賀田 자신이 부과한 시험을 거쳐 비로소 임용된 사실은 이를 잘 말하여 준다. 다시 말해서 세무주사들의 임명 및

30) 黃玆, 『梅泉野錄』(國史編纂委員會, 1955), p39 참조.

31) 葉錢通用地方에 파견된 稅務主事들의 주요 임무가 葉錢을 징수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皇城新聞』 1907년 8월 17일字的 「果則不法」에서, '南來人の 傳說을 據호는 全南 寶城郡 稅務主事 閔泳贊氏가 以葉錢으로 星火督擄호야 (下略)'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32) 澁澤榮一, 前掲書, pp. 137~139 참조.

과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함께, 엽전의 강제회수 노력은 바로 日賀田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세무주사들을 통한 강제적인 회수노력은 엽전 회수액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이는 다음의 <表-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³²⁾

1905년부터 매월 각 항구에서 수출된 엽전의 액수를 정리한 위의 표는, 세무주사들이 엽전을 징수하기 시작한 1906년 10월 이후 엽전의 수출액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때 회수된 엽전은 바로 각 항구로 보내져 일본으로 수출된 것이다.³³⁾

Ⅲ. 韓國民의 均稅運動

1. 均稅運動의 발단

결세를 엽전 80兩으로 책정하여 이를 강제로 징수하자 엽전통용지방민들의 불만은 고조되었다. 이것은 농민들의 항의 시위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서 『皇城新聞』 1906년 3월 13일字的 「兩郡民擾」에

慶北觀察使 申泰休氏가 內部에 報告하되 仁同郡에서 結錢事로 人民이 會集하여 屈入官廷하야 威脅官長에 擅放罪囚하고 莫重結價 八十兩을 葉六十兩으로 減削하라하야 一大惹鬧가 起하얏고 善山郡에는 該郡民李敏右等五名이 結價感下事로 發通名面에 煽動多民하야 今月初十日에 曾于海平場基하야 數千名이 突入官家하야 郡守를 威之脅之하야 歐之打之하야 更出場市하얏스니 當場光景은 聞甚驚駭언더러 撥以民習에 駭乘莫基이기 該狀頭七名을 捉囚하고 定查官番覈이라 하얏더라.

고 있듯이, 80兩의 結稅를 60兩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일어난 慶尙 仁同과 善山の 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그 한 예이다. 이와 같은 減稅의 요구는 화폐정리사업 이후, 특히 엽전통용지방에서 빈번하게

33) 이같은 사실은 『皇城新聞』 1907년 3월 2일字的 「舊貨漸整」에서 '(上略) 又現今 銅價가 大端히 高騰하야 葉錢이 陸續히 日本內地로 輸出되는 故로 (下略)'라 있듯이, 회수된 엽전이 일본으로 수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表-1〉

各港別 葉綫 輸出額表

(단위: 圓)

항구 月	인천	부산	원산	진남포	목포	군산	마산	성진	계
1905 1月		461							461
2		520			1,080				1,600
3		1,295			3,660				4,955
4		1,776		280	1,140				3,196
5		650			200				850
6		560			490				1,050
7		1,795			200				1,995
8		1,381			200				1,581
9					990				990
10		640			120				760
11		20			250			2,668	2,758
12								85,500	85,500
1906 1		320			1,130			969	2,423
2		410			1,720			461	2,592
3		1,310			4,640	588		1,462	8,000
4		589			5,935	600			7,124
5		2,178	630		6,440	2,896		3,000	15,144
6		4,515	528		7,170	3,040			15,253
7			208			2,588		263,600	266,396
8		1,013	332	500	3,090	1,344		6,782	13,061
9		1,490	53		2,510	1,140			5,193
10		7,698	920		2,781	4,718		2,765	18,882
11		9,280	28,632		3,743	7,440		77	48,132
12		21,930	13,573		3,750	24,300		83,400	146,952
1907 1		133,292	35,696		33,934	30,570	19,836		253,328
2		155,753	33,398		32,335	14,332	5,790		241,649
3		123,952	16,970		62,230	2,720	18,800		209,281
4	1,610	637,392	13,472		40,225	9,574	460		127,470
5		370,528	7,080		19,650	16,906	1,228		81,936
6	150	10,428	4,950		16,570	10,308	1,334		40,740
7	1,740				3,420	368			5,528
計	3,520	584,090	156,442	780	258,603	133,393	30,443	450,705	1,417,981

제기되었다.

그러나 1906년 말까지 이는 시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감세를 요구하는 시위 자체가 산발적이고 비조직적이어서 정부나 통감부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 나아가 日賀田가 시행한 교묘한 징수 정책에 대하여 근본적인 지각이 없었던 것도 큰 요인 중의 하나였다. 요컨대 1906년도에 일어났던 대부분의 항의 시위는 단순히 감세를 목적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³⁴⁾ 다시 말해서 이 당시 엽전통용지방민들의 요구란 엽전 80兩이 큰 부담이 된다하여 이를 줄여달라는 것일 뿐, 신화결세액 12圓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그들의 대부분이 신화결세액 12圓이 책정된 원인과, 지방에 따라 결세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잘 몰랐기 때문이었다.³⁵⁾ 이를테면 앞에서 살펴본 『皇城新聞』의 「善山民擾」의 보도 태도에도 나타나 있듯이, 『皇城新聞』 역시 처음에는 ‘엽전 80兩·신화로는 12圓’이라는 결세 원칙이 정당하다고 여겼으며 이에 따라 엽전결세액을 낮춰 달라는 善山郡民들을 비난한 것이다.³⁶⁾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오래가지 않아 곧 밝혀졌다. 그리고 한층 가혹해진 세무주사들의 엽전징수로 말미암아 엽전통용지방민들이 곤경에 직면하면서, 그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것이 바로 균세운동이다.³⁷⁾

34) 이와 같은 항의시위들은 단순히 葉錢結稅額을 80兩에서 60兩으로 낮춰 달라는 즉, 減稅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다. 여기에는 심지어 50兩 또는 40兩으로 減稅하여 달라는 시위도 있어 減稅額의 차이도 있었다.

35)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시사해 주는 것은 『晦山集』 卷 9, 「均稅顯末」중에 '(上略) 但假方人民 不知用葉用銅之分揀 有六十四兩之減稅說者 甚可笑也 (下略)'이라 한 것이다. 변방 즉, 葉錢通用地方에 있는 사람들은 엽전과 백동화가 나뉘어 사용되는지, 또는 60兩 40兩의 減稅說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하였다.

36) 그러나 그 후 『皇城新聞』 1907년 3월 25일字의 논설에서는 오히려 엽전통용지방민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37) 李相燦, 「1906~1910년의 地方自治制度 변화와 地方自治論議」, 『韓國學報』 42, 1986, p.56에서 '均稅運動'이란 표현을 제일 처음사용하였으나 별다른

균세운동은 1907년 2월 末 全羅南道 長城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皇城新聞』 1907년 3월 13일 字의 「長民發民」의 기사가 주목된다.

全羅南道長城郡人民이 國結一結에 新貨十二元은 太多하니 八元式上納하고자 板刻으로 通文을 發判해야 各處에 翰示하는 故로 該郡財務官이 通文一幅을 度支部 財政顧問部로 再作日에 送交하였더라

이에 의하면 全南 長城郡民들은 신화로 12圓씩 내는 결세를 8圓으로 납부하자는 내용의 通文을 작성하여 각 처에 배포했으며, 이 소식을 지방 財務官이 度支部 財政顧問部에 보고하였다.³⁸⁾

결세를 신화 8圓으로 납부하고자 통문한 의도는, 엽전 80兩으로는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나아가 신화로 납부할 경우에는 他道, 즉 백동화통용지방과 마찬가지로 8圓으로 납부하자는 데에 관심을 둔 것으로 믿어진다. 요컨대 이같은 균세운동은 일본의 경제적 침략 의도를 간파한 엽전통용지방민들이, 12圓인 결세를 백동화통용지방과 같이 8圓으로 납부하고자 일으킨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전에 일어난 감세를 위한 항의 시위와는 구별되는 균세운동의 특징이다.

신화결세액 12圓이 책정된 내막을 알아내고, 균세운동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長城人 晦山 邊昇基(1866~1937)이다. 그는 松沙 奇宇萬의 門人으로 전통적인 유학을 수학한 衛正斥邪 계열의 인물이다.³⁹⁾ 그러나 1900

설명은 없다. '均稅'란 결세를 均一하게 하자는 의미로서 결세를 減額하자는 '減稅'와는 그 뜻이 전혀 다른 것이다.

38) 이는 『指令及報告』, 奎 18018 V. 15 「光州稅務官報告書」(1907. 4. 1) 및 同 첨부 通文(陰 1906. 12)에서도 같은 내용이 찾아진다.

39) 邊昇基의 인물에 대해서는 『晦山集』 卷 12에 수록된 「行狀」 및 「家狀」 그리고 「墓誌銘」을 참고할 수 있다. 한편 그는 균세운동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晦山集』 卷 9에 기록하고 있어, 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晦山集』은 1939년에 全羅南道 長城郡 永思亭에서 2冊으로 발간되었으며, 현재 高麗大學校 景和黨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원본인 『晦山詩沙』 3冊과 『晦山漫錄』 4冊도 현존하는데 이는 종손인 邊東佑氏(서울거주)가 소장하고 있다.

년 경 한양으로 가서 成均館에서 수업하며 乙巳條約 체결을 목격하자, 新學問을 통한 國權회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愛國啓蒙運動家로 변화한 것이다. 그는 1907년 3월부터 『大韓每日申報』의 기자로도 일시 활약했으며, 그 해 7월에는 湖南學會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湖南學報』의 편집위원으로도 활약한 바 있다.⁴⁰⁾

邊昇基가 均세운동에서 결정적인 활약을 한 사실은 그의 문집인 『晦山集』 卷 9 「統監府再度長書」 중에서

(上略) 威察曰 今日閣會 兩南及江原嶺東九郡 咸北六鎮 十二元税金 減爲八圓 誠意外事也 今在邊碩士 全南長城人也 實南道才士 而以減稅事數年從事 吾嘗謂之妄學 今日竟成所願 司謂誠力所到 無事不成 咸北六鎮亦蒙此惠云 威察因與請知 深加敬意而別 (下略)

이라 있듯이, 邊昇基는 오랫동안 均稅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嶺南通商지방의 결세액이 12圓에서 8圓으로 시정된 이면에는 그의 역할이 크다는 威鏡道 관찰사의 언급으로도 짐작된다.⁴¹⁾

그렇다면 邊昇基는 어떻게 해서 均세운동에 나서게 된 것일까? 그가 均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직접적인 계기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丙年十一月二十日(1907년 1월 14일) 奉度支部主事安漢鎮於小龍洞 網巾客主孫泳大家 與之偕歸舍館 安謂余曰 今日吾行欲見益山郡人 而未見而歸甚可歎也 近日益山郡以稅政不均事 民擾起而將頭一人被掌 至於落井 自死之境 事甚仰鬱 稅政不法理由 年來新貨與舊貨有加計 國稅則新貨同爲八十兩(八圓) 而捧葉官吏 取食加計 換納銅貨 一結葉錢四五十兩內外也 自本部調查 用銅用葉郡用銅郡依舊爲八圓 用葉郡加四圓 以十二圓定額 而全北益山郡人於用銅七郡 亦以八圓定額 而時郡守與觀察 署理 全州郡守共謀 勒捧葉錢八十兩 故結民起而等訴自官不聽 因團聚爲結民擾(中略) 余曰 然則該獨益山郡之加徵四元 實非國政 十二圓郡民聯合等訴如何(下略)

40) 그는 『湖南學報』 7·8·8·9 호에 「新舊同依論」, 「革去舊習論」 등의 논설을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로 舊習을 타파하고 新學을 교육하여 國權회복을 이룩하자는 것이었다.

41) 단, 위의 사료에 표기된 '減稅事'는 잘못 서술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후에

이에 의하면 邊昇基는 度支部主事 安漢鎭을 통하여 益山郡의 향의 시위를 알게 되면서 均세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발생요인은 말할 것도 없이 葉전 80兩을 강제로 징수한데 있었다. 益山은 앞서 살핀 威悅과 마찬가지로, 全北에서 백동화를 사용하는 지역이므로 新貨 8圓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均수와 관찰사가 강제로 葉전 80兩을 징수하자 均현민들이 봉기한 것이다.

그 당시 葉전통용지방에서는 백동화통용지방과 결세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므로 결세액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葉전통용지방에서 그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 과정에서 有志들의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그들의 협조없이 는 여론을 조성하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이리하여 일단 長城으로 간 邊昇基는

(上略) 丁未正月初五日 (1907년 2월 17일) 訪東山 金草亭星圭 留宿語及均稅事 因述學安密議事 草亭傾聽之曰 稅額差等既已聞知 而其詳細理由 今始得知矣 若爾則此事 兄與宋博士協力 一邊發文 各郡鼓動民心 一邊提訴道部則 吾則·事後援矣 兄今歸去 通奇于宋博士 使之與相見焉 (下略)⁴²⁾

이라 하였듯이, 1907년 2월 17일 草亭 金星圭(1863~1935)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의논하였다. 그러자 金星圭는 이에 同意하고, 宋榮淳(1841~1916)에게 알려 함께 일을 할 것을 권했다. 金星圭는 잘 알려진 바 있듯이 光武改革때 量務監理로 활약한 바 있고, 농업과 농민의 생활향상에 매우 관심이 깊어서 「農業改革論」과 「社會改革論」을 발표한 인물이었다.⁴³⁾

金星圭가 邊昇基에게 추천한 宋榮淳 역시 長城 출신이며 盧沙 奇正鎭(1798~1879)의 門人으로서, 1896년의 의병운동에도 참여한 항일의식이 강한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長城鄉校의 齋長을 지낸 바도 있어 長城의 公

보이는 모든 史料에는 '均稅事'라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42) 『晦山集』 卷 9, 「均稅顯末」

43) 金星圭에 대해서는 金容燮, 「光武量田의 思想基盤—量務監理 金星圭의 社會經濟論—」, 『亞細亞研究』 15, 1972가 참조된다.

論을 이끌 수 있었다.⁴⁴⁾ 『晦山集』 卷 9 「均稅顛末」에는

(上略) 今聞君之言確然也 此次發文各郡 爲計而先開本鄉會 議定舉事 計劃然後
乃可差于也 (下略)

이라 하여, 그가 邊昇基를 통해 엽전과 신화의 換率관계로 신화결세액에 차이가 있음을 알자 均세운동에 동의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그는 먼저 鄉會를 소집하여 이를 설명한 후에 일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均세운동은 이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2. 均稅運動의 전개

均稅運動은 1907년 2월부터 시작하여 약 1년 4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그 전개과정과 운동의 양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고양되었다. 처음의 均세운동은 여론형성 및 이를 토대로 한 건의운동에 주력하였으며, 이 노력은 1907년 2월부터 1908년 1월까지로 이어졌다. 그 후 이러한 방식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침내 납세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 납세거부운동은 1908년 3월부터 그것이 마무리 된 5월까지 이어진다.

1) 輿論形成 및 建議運動期

均세운동은 長城通文이 작성되어 각 군에 전해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통문을 작성한 사람은 邊昇基였다. 그는 結稅額이 8圓에서 12圓으로 증가하게 된 진상을 자세히 밝혀 서술하였으며, 또한 백동화통용지방과 같이 8圓으로 均稅하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⁴⁵⁾

통문은 1907년 2월 27일 宋榮淳의 주최로 열린 長城鄉會에서, 여러 유자들의 협력하에 각 군에 전달되었다. 이 때 통문 발기에 동의한 인물들

44) 宋榮淳에 대해서는 그의 文集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후손들이 간추려 만든 『成均館博士石松宋榮淳先生行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晦山集』 卷 12, 「祭宋博士榮淳文」도 그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45) 이 通文은 『晦山集』 卷 9 「均稅顛末」에 수록되어 있다.

은 宋榮淳을 비롯한 10명으로, 前參事 奇觀衍·李在國·金鶴洙와 前主事 金容珣 그리고 幼學 郭漢豐, 校任 邊萬基·金永中, 院任 金堯尙·金鍾九와 金鎔九 등이었다.⁴⁶⁾ 이들은 대부분이 兩班으로 전직 관리이거나 鄕校에서 직임을 맡은 유생들이며, 동시에 長城 지역의 各門家系 출신으로 그곳에서 일정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던 사람들이다.⁴⁷⁾ 그리고 이들 중에는 지주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결세는 지주층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다.

이리하여 균세운동은 각 군의 명망있는 유생들에게 알려졌으며, 이들을 서울로 데리고 올라가 정부에 청원하는 일은 邊昇基가 담당하였다.⁴⁸⁾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었고 大韓每日申報社에도 관여한 바 있어 당시 여론을 주도한 언론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邊昇基는 1907년 4월 13일, 度支部 財政顧問室에서 열린 會議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晦山集』 卷 9 「均稅願末」에 의하면

(上略) 安(漢鎮)曰 全南財政顧問井上邪二 持長城通文及公函二通 昨來顧問室 發論曰 湖南人心騷擾 擇稅困難 此實稅政不均所致 通文辭意 使之詳細翻譯 吾爲加註 演譯 度顯言內 明日本部及顧問室役員 合同開會議定云

이라 있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全羅南道 財政顧問인 井上邪二가 장성 통문으로 인하여 결세정수가 어렵게 되었다고 보고하자,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소집되었던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邊昇基와 군 대표들은 결세 12圓의 부당함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한 뒤, 8圓으로 균세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度支部 관계자는 그것이 너무 큰 액수이며, 나아가 정부의 방침인 까닭에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⁴⁹⁾ 이에 대하

46) 註 35) 참조. 첨부된 通文에서 발기자 명단을 찾아볼 수 있다.

47) 이들 가운데서도 奇觀衍·宋榮淳 등은, 長城에서 손꼽히는 3大名門家系 출신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宋俊浩, 「朝鮮의 兩班制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兩班制에 관한 오늘날의 論說이 갖는 몇 가지 問題點—」, 『全羅文化論叢』 1, 1987, pp.14~18 이 참조된다.

48) 『晦山集』 卷 9, 「均稅願末」 참조.

여 邊昇基와 各郡의 대표 수백명은 『晦山集』 卷 9 「均稅願末」에서

(上略) 局長因問曰 鄉民多數上來耶 余曰 各郡一二人式數百名也 曰 無生室費皆歸里 代表一二人 留待無妨也 曰 各郡皆自發の上來者也 必不以生等之言決其去留也 曰 陳情事 今皆諒悉 退待可也 (下略)

라 했듯이, 시정해주지 않는 한 물러설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대항하였다. 그러자 度支部에서는 1907년 4월 16일 字로 다음과 같은 훈령을 하달하였다.

用錢之郡每結紙貨十二圓式計定 與用銅郡相殊 乃通用貨幣之基因結果 此之舊例民非加納 國非濫徵 此係暫時之 宜非長久之規 宜可追今矯救 事關重大有難一時議決 其均定方法 方行調查 自明年爲始 將欲實施 以圖平均之定 先慈發訓 到郎飭飭於官下稅務所曉飭人民 俾爲安心⁴⁹⁾

즉, 明年(1908)부터는 결세를 균세하여 줄 것이며 이를 각 세무소에 하여 시행케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약속을 믿고 邊昇基와 各郡의 대표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와 같은 度支部의 훈령은 임기응변책에 불과하였다. 그것은 度支部에서 훈령을 내린후 불과 7일만인 『皇城新聞』 1907년 4월 23일 「沮稅捉徵」에도 나타나 있듯이

度支部에서 內部에 照會되 長城郡居는 宋榮淳·奇觀衍·李在國 等 十餘名이 每結에 新貨八圓式 納하며 新貨每圓에 葉五兩으로 通用하게 한다 稱하고 各郡에 通文하야 民心이 疑眩하고 稅納이 愆滯이기 該通文一度를 添付報告라 하얏기 據查호則 (中略) 發訓于該地方驚驚하야 該首頭三民을 爲先捉囚하고 照法嚴勸케 하라 하얏더라

라고 하여, 이 일에 관여한 長城郡의 宋榮淳·奇觀衍·李在國 등 3人을 곧 체포하라고 명령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⁵¹⁾ 다시 말해서 度支部는

49) 同上.

50) 同上.

51) 이에 의하면 邊昇基는 체포되지 않았다.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長城通文 발기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빠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짐작된다. 그리고 구금되었던 人物들은 얼마 후에 다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 곧 풀려났던 듯하다.

균세할 것을 약속하는 훈령을 하달하여 各郡의 대표들을 일단 해산시키는 한편, 주도자들을 체포함으로써 균세운동을 저지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듯, 宋榮淳 등이 체포되면서 균세운동은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邊昇基는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에 均稅願末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려 하였다.⁵²⁾ 그는 균세운동의 경위를 신문에 기사화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그에 힘입어 구속된 사람들을 구해보려 한 것이다.

이리하여 균세운동의 경위에 관한 논설은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30일 字 雜報에 「以葉加斂」이란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그러나 이미 각 군의 대표들이 다 흩어졌으므로 신문보도는 별다른 효과를 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해 9월 19일 邊昇基 등은 度支部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른바, 중앙관서에 청원서를 올리는 建議運動에 주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청원서는

(上略) 請願書略曰 (中略) 八圓均定之實施訓令 尙不發布 民情悶鬱不能自止 茲以不遠千里 相率仰籲 照亮後特施 一視之政 兩南結稅 亦以八圓均定以副遠民 倭蘇之望伏祝 隆熙元年 陰八月日 請願人 全羅南道長城郡 宋榮淳·邊昇基⁵³⁾

이라고 하여, 8圓으로 균세하여 주겠다고던 度支部 훈령대로 兩南結稅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 뒤 이와 같은 청원서는 9차례나 끈질기게 제출되었다.⁵⁴⁾

이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되는 사실은 『大韓每日申報』 1907년 10월 3일 字의 「結民請願」이라는 기사에서

全羅南北道結民等이 各道에서는 每結에 八圓式納稅호디 惟獨 本道에는 十二圓式定稅호 事에 對호야 各郡에 代表二三人式 定送호야 度支部에 請願호다더라

52) 이에 대해서는 邊昇基의 일기인 「晦山日記」 1907년 4월 20일자의 기록이 참조된다. 「晦山日記」는 『鳳樓·鳳南日記』(國史編纂委員, 1979)에 수록되어 있다.

53) 『晦山集』 卷 9 「均稅願末」.

라고 하였듯이, 全羅北道の 각 군에서도 2·3인씩 대표를 뽑아 結民代表團을 구성한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均세운동이 처음에는 全羅南道에 그쳤으나, 그 후 全羅北道에까지 확대된 사실을 말해 주며, 이러한 기반의 확대에 힘입어 건의노력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한편 『晦山集』 卷 9에 의하면, 「全羅南北道民論」과 「全南結稅最重狀況」과 「稅何不均」 등의 제목으로 청원서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⁵⁴⁾ 이들 가운데 「全南結稅最重狀況」과 「稅何不均」은 각각 『大韓每日申報』 1907년 10월 9일字와 15일字에 「全南의 結稅最重한 情況」과 「均稅請願」이란 제목으로 기사화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均세운동의 경위와 度支部에 청원한 사실을 밝힌 내용이, 신문에 기사화됨으로써 均세운동은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에 올랐다.

邊昇基를 중심으로 한 全羅南北道 結民代表들은 度支部 뿐만 아니라 中央관서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하였다. 『大韓每日申報』 1908년 5월 7일字에 의하면

兩南稅 比他道加徵四圓 故本人等 以比呼訴爲二十九度 而丁未四月度支部訓令以爲此非 久之規宜追 今矯下自明年爲始 以圖平均이라 하시니 凡兩南結民遵此訓令以他道例輸納 加徵條勿納 以俟矯下爲國民義 故玆以度民代表 全羅南北道結民代表 : 宋榮淳·邊昇基·朴海龍等告白

이라 하여, 均稅事로 무려 29차례나 청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⁶⁾

均세운동이 이처럼 건의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은 이것이 당시 행해지던 민족운동의 방법론 중, 가장 일반적인 움직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均세운동에 참여하였던 상당수가 湖南學會의 회원들이라는 사실이다. 朴海龍(南原)·曹玉承(木浦)·邊鎮傑(長城)·

54) 同上.

55) 同上.

56) 同上.

朴準弼(鎭安)·徐相玉(益山) 등이 그들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노력도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었다. 『晦山集』卷9「公函中央農會書」중에

(上略)故丁未九月初(1907년 10월)各郡結民代表 五十人上京 訴部則願曰 邇來調查 姑未確定 其後各郡民一百西十七人 連伏路側 五次連訴則 已有前題事給大抵 前度令則既云 後明年均定 其後題指則又去姑未確 以莫重政府命令贈作朝三暮四之術 此不可使 聞於隣國 繼以獻議于中樞院 公函于顧問室 呈書于內閣 亦無答焉

이라 하여, 度支部는 각 군 대표들이 건의할 때마다 시정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실제로 있어서는 항상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일본의 통치하에서, 정부에 대한 건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며 군세운동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⁵⁷⁾

당시 일본은 1907년 7월 「헤이그 密使事件」을 기회로 삼아 高宗을 퇴위시키고, 「韓·日新協約」을 강요하여 한국의 식민지화 작업을 더욱 진전시키고 있었다. 군대를 해산하고 顧問政治를 次官政治로 전환시켰으며, 한국 재정을 식민지 재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새로이 마련하였다. 1907년 12월에 설치된 「財務監督局官制」와 「財務署官制」가 그것이다.⁵⁸⁾

財務監督局과 財務署의 설치로 인해 재무기관과 일반 행정기관이 완전히 분리되었고, 일본인들이 재정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재무에 관계된 모든 民訴는 감독국의 심사를 거쳐야만 정부에 접수될 수 있었다. 더우기 엽전정리가 일본의 경제적 이익과 깊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군세

57) 이와 같은 건의운동의 한계성에 대하여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 權熙英, 「大韓自強會의 社會思想과 民族運動」, 『해군 제 2 사관학교논문집』 2, 1980, pp. 175~184

58) 『法令資料集』 6, pp. 131~132 勅令 제46호, 「財務監督局官制」: pp. 133~134 勅令 제47호 「財務署官制」 참조. 그리고 李潤相, 前揭論文에 의하면 이 제도들의 설치는 한국 재정을 식민지 재정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 준 것이었다 한다.

운동의 건의서는 항상 監督局으로부터 기각되었다. 이제 邊昇基를 비롯한 均稅운동의 참여자들은 均稅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좀더 강력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2) 納稅拒否運動期

이제 均稅운동은 건의운동이라는 소극적인 방법을 탈피하고 納稅拓否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皇城新聞』 1908년 4월 12일字에 실린 「結民總代佈告」란 기사가 주목된다.

全羅南道民人總代 宋榮淳·朴海龍·邊昇基·曹玉承氏 等이 用葉道에는 每結頭에 四圓式加徵하는 事로 全慶四道人民에게 佈告文을 發호되 凡我四道民은 自丁未結稅爲加호야 每結에 八圓은 輸納호고 加徵條四圓은 斷然不納호야 以後政矯教誨이 人民義務에 適當호다 호앗더라.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1908년 4월에 재개된 均稅운동은, 결세를 12圓 중 4圓을 제외하고 8圓만을 납부하자는 納稅拓否運動의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알려준다. 여기에서 각별히 주목되는 점은, '全慶四道人民'이라 하여 湖南地方뿐만 아니라 嶺南地方民에게까지 호소하여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촉구한 점이다. 나아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요컨대 이 시기의 均稅운동은 지역적인 확대와 더불어 참여인의 범위도 대단히 광범위해졌으며, 또한 건의운동과 같은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납세거부라는 일종의 저항운동으로 바뀐 것이다.

이처럼 均稅운동의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晦山集』 卷 9 「與淳昌鄉中公函」을 보면

(上略) 戊申二月初二日(1908년 3월 4일) 入處金草亭家 與之議事 草亭曰 此港有農會 而會長深井泓 在日本已經軍部次官 與識名望港內日人中屈指人也 日前相逢言及此事 深井曰 日本稅法 民不承諾 國無徵收之權 朝鮮稅制無理 (中略) 草亭曰 現今徵收期旁年 愚民不勝 官吏之強制四圓條 皆己納付則 不能遷推之勢 木浦新報紙以不納同盟廣告發布 使結民停納然後 事可圖成矣 (下略)

라 하였듯이, 金星圭가 木浦農會 회장인 深井泓으로부터 일본의 세법에 관해 들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세법은, 국민이 승락하지 않으면 국가는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없다고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의거하여 납세거부운동을 국민의 권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1908년 3월 4일, 均稅事를 의논하기 위하여 金星圭를 찾아간 邊昇基는 납세거부운동의 제의를 듣자 즉시 동의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건의운동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이 방식에 회의를 품고 있었던 그는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邊昇基의 이같은 입장은 『晦山集』 卷 9 「公函中央農會書」에서

(上略) 退待朝家處分爲可事 退而思之 民之所信者 政府命令也 而今不可信 今年結稅 本人爲民代表 雖就刑獄 定率八圓 外加四條 期欲不納 官吏壓制之下 愚彼農民 必受強徵矣 如是則亦將無效矣

라 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그는 균세하여 주겠다던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고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농민만 계속 관리의 강제 징수에 시달릴 것이며 균세운동은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납세거부운동은 金星圭가 직접 포고문을 작성하여 『木浦新聞』에 게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내용은

光武九年(1905) 自政府財務整理時 全慶四道結稅金 此他道每結頭加徵四圓 光武十一年四月十六日 發教云云 本人等自光武九年 十一月以後 郡署道院部府 澀血呼有于茲二十三度之多也 政府諸公 明燭加稅事 於國政爲不正當 凡我四道民人 自丁未結稅金爲始每結八圓 外加四圓條 斷然不納 以後政府之矯教 實是人民義務 雖有暴虐官吏之強制的徵收 加徵四圓 一心抗拒 上以朝國政之歸正 下以俾民心之抑鬱 事 慈以廣告 照亮施行之地爲要⁵⁹⁾

라 하여, 관리의 강제 징수에 일체 항거하여 4圓을 제외한 8圓만을 납부

59) 『晦山集』 卷 9, 「均稅顛末」 참조.

해야 되며, 이것이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민이 단합하여 납부를 거부하는 방법만이 균세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광고의 일체 경비는 金星圭가 전담하였으며, 邊昇基 및 宋榮淳·曹玉承 등도 함께 서명하였다.

이 포고문이 실린 『木浦新聞』의 발행부수는 약 1만 5천부에 이르렀으므로, 이 포고문이 배포된 후의 효과는 실로 컸다.⁶⁰⁾ 『大新每日申報』 1908년 4월 28일 字의 「稅何不均」에서

全羅南道結民代表 莞島申宰均 慶尙南道咸安趙性順兩氏가 度支部에 請願을 內概에 (中略) 惟我結民은 咸須照亮하고 期待歸正하고 雖捧稅所 舊舊督促이라도 八圓이외는 切勿收刷하라 하였더라

고 하였듯이 全羅南道 莞島뿐만 아니라, 慶尙南道 咸安에서도 납세거부운동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와 함께 同新聞 1908년 4월 27일 字의 「均稅建議」에서도

昨日에 中樞院에서 例會를 開하고 湖嶺兩南結民代表人 宋榮淳李喆榮兩氏가 均稅事로 獻議한 事件을 可否取決하라 閣에 建議하였더라

고 하여 嶺南結民代表인 宋榮淳·李喆榮이 均稅事로 진의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제 全羅南北道만이 아니라 慶尙南北道民까지 균세운동에 참여하게 된 양상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균세운동은 湖南學會뿐 아니라, 다른 애국계몽단체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그들의 지원 아래 더욱 가속화되었다. 『晦山集』 卷 9 「統監府再度藏書」에서

(上略) 草享曰 因要余同往 大韓協會見南宮億 說明均稅事實 南宮會長亦爲贊同

60) 이는 嶺·湖南地方의 3만여 洞里 가운데 그 과반수에 달하는 수였다. 이 발행부수로 미루어 보건대 영·호남 지방 대부분의 洞里에 납세거부 포고문이 배포되었다고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줄 안다. 『木浦新聞』의 발행부수는 하루 평균 21만부였다. 이에 대해서는 『朝鮮總督府總計年報』 明治 41, p. 166이 참조된다.

自該會送總代二人質于本部(下略)

라 하였듯이, 金星圭와 邊昇基는 大韓協會의 南宮億(1862~1939)을 찾아가서 均세운동의 경위를 설명하였다. 大韓協會는 당시에 조직된 여러 애국계몽학회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활동이 활발했던 학회였다.⁶¹⁾ 그러므로 大韓協會가 협조한다면 均세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각 애국계몽단체에서 總代 2人씩을 보내와 均세를 위해 노력한 것은 南宮億의 지지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均세운동은 大韓協會를 비롯한 각 단체의 지원아래 더욱 확대되었다. 즉 大韓協會는 『大韓協會會報』 1908년 5월 25일자에

全羅道稅民總大宋榮淳氏等이 用葉郡에 每結四圓式如徵 稅率不均이니 他道例로 輸納하고 兩南에 發文하였더라

고 하여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여론조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각 신문사들의 협조도 적지 않았다. 당시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는 납세거부운동에 관한 記事를 계속 보도하여 均세운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⁶²⁾ 이러한 지원을 배경으로 邊昇基를 비롯한 납세

61) 李鉉涼, 「大韓協會에 관한 研究」, 『亞細亞研究』 13-3, 1970.

62) 이러한 신문기사들과 『晦山集』 卷 9에 수록되어 있는 均稅運動에 관련된 청원서들을 함께 묶어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晦山集	新聞記事
1	均稅願末(陰, 1906. 11. 20)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30일, 「以葉加歛」
2	全羅南道民論(大韓每日申報掲載)	〃 1907년 10월 3일, 「結民請願」
3	每日申報雜報	〃 1907년 10월 6일, 「全南의 結稅最重情況」
4	皇城新聞雜報欄 全南結稅最重狀況	〃 1907년 10월 11일, 「雜報」
5	八月二十五日 再度請願書(1907. 8. 25)	〃 1907년 10월 15일, 「均稅請願」

거부운동 주도자들은, 中央農會와 統監府·中樞院 등의 기관에 다시 균세 하도록 건의하였다.⁶³⁾

이렇게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이 다방면으로 전개되어 여론이 비등하자 統監府는 실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록 납세거부운동이 咸鏡道·江原道 일부 지역과 濟州를 제외한 嶺·湖南地方에서 전개되었지만 전국에서 결세의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들 지방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統監府는 납세거부운동을 무마시키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이 사실을 湖南學會本部에 있던 邊昇基에게 통보하였다. 즉 均稅事가 통감부에 접수되었으며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였다.⁶⁴⁾ 그리고 5월 20일에 개최된 정부회의에서는 마침내 嶺南·嶺北지방의 결세를 8圓으로 결정하기에

6	二十七日 三度 請願 (1907. 8. 27)	"	1907년 11월 27일, 「稅務決議」
7	稅何不均 (皇城新聞 及每日申報掲載)	『皇城新聞』, 1908년 4월 4일, 「結民佈告」	
8	度支部四度請願	『大韓每日申報』, 1908년 4월 8일, 「雜報」	
9	度支部五度請願	『皇城新聞』, 1908년 4월 12일, 「結民總代佈告」	
10	六度請願	『大韓每日申報』, 1908년 4월 21일, 「稅何不均」	
11	七度請願	"	1908년 4월 23일, 「稅將歸壹」
12	八度請願	"	1908년 4월 27일, 「均稅建議」
13	九度請願	"	1908년 5월 15일, 「均稅無答」
14	公函度支部顧問官	"	1908년 6월 2일, 「結稅歸正」
15	上內閣大臣書	『皇城新聞』, 1908년 6월 11일, 「結民三度獻議」	
16	公函統監府書		
17	顧問部再度公函		
18	與淳昌鄉中公函		
19	公函中央農會		
20	中樞院三度獻議		
21	統監府再度長書		

63) 『晦山集』 卷 9 참조.

64) 『晦山集』 卷 9 「統監府再度長書」 참조.

이른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大韓每日申報』 1908년 6월 2일 字「結稅歸正」에서

兩南結稅均定事로 結民代表 邊昇基·朴海龍氏등이 度支部에 度請願하고 內閣에 連次長書翰은 前報에 已擧어니와 政府에서 從民願均定하기로 表裁하야 兩南結稅를 八圓으로 實施하얏다더라

라 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로써 1907년 2월 27일부터 1908년 5월 20일까지 약 1년 반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균세운동은 끝내 엽전통용지방민들의 승리로 결말지어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균세운동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확대되었으며 그 양상도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개 상황은 참여층의 성격·운동방법 그리고 지역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 운동을 주도한 집단은 <表-2>에서도 보여지듯이⁶⁵⁾ 처음에는 지주층을 포함한 유생들이 중심이 되었다가 점차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대다수 국민까지 가세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운동의 전개방식은, 초기에는 각 군 鄕校에 通文을 보내 군 대표 1·2씩을 선발하여 結民代表團을 구성, 度支部 등 중앙관서에 건의하는 방법에서, 납세거부운동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셋째, 지역적 측면으로는 全羅南道 중심에서 全羅北道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慶尙南北道 지역까지 확대되는 과정을 밟았다. 이러한 균세운동의 전개과정에는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등의 言論과, 湖南學會·大韓協會 등 여러 애국계몽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균세운동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일본의 엽전정리와 그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으로 일어났던 균

65) <表-2>는 均稅運動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의 성격 변화와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편의상 단계별로 구분지은 것이다.

<表-2>

主要參與人物 分析表

	姓名	官 職	居住地	均稅運動에서 담당 했던 일	비 고
均 稅 運 動 의 발 단	邊昇基 (晦山)	長城郡守署 理	長城	均稅運動시작, 通文 작성. 서울에서 경 부와 협상, 建議담당	大韓每日申報社 기 자, 湖南學會 회원, 학보 편집위원
	金星圭 (草亭)	量無監吏	木浦	納稅拒否運動 제의	
	安漢鎭	度支部 主事	서울	均稅運動 발단에 관 여, 정보제공	
	宋榮淳 (石松)	長城鄉校 齊長成均館 博士	長城	地方에서 여론 조성 담당, 결민대표 단 조직, 향회소집, 通 文발통에 관여	1896년 의병운동에 참여 盧沙門人
	奇觀衍	前參事	〃	通文 작성, 발통에 참여	
	李在國	〃	〃	〃	
	金鶴洙	〃	〃	〃	
	金容珣	前主事	〃	〃	
	郭漢豐	幼學	〃	〃	
	邊萬基	校任	〃	〃	邊昇基의 兄
	金永中	〃	〃	〃	
	金堯尙	院任	〃	〃	
	金種九	〃	〃	〃	
	金鎔九	〃	〃	〃	1908년 奇參衍의 뒤 를 이어 의병장이 됨
建 義 運 動	朴準弼 (肯農)	內閣參書官	鎭安		湖南學會 회원
	朴海龍	·	南原		〃
	徐相玉	·	益山		〃
	曹玉承	·	木浦		〃
	邊鎭傑 (止山)	·	長城		〃
	趙性順	·	▲		
	李喆榮	·	慶尙道		

▲ = 慶尙威安

세운동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앞에서 논의되어 온 바를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貨幣整理事業은 일본이 한국의 재정을 식민지 재정으로 전환시키려는 가장 첫 단계 작업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舊貨(韓貨)를 정리해야만 하였다. 화폐정리의 주요 대상은 백동화와 엽전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은 엽전을 회수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엽전은 원래 銅의 함유량이 많아서 금속으로서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더우기 1906년 末에는 국제적으로 銅의 시가가 폭등하였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여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화폐정리사업을 담당했던 일본인 재정고문인 目賀田는 교묘한 換率 정책을 이용하여 엽전의 결세액은 80兩, 신화의 결세액은 12圓으로 정하여 징수하는 한편, 稅務主事를 파견하여 강제로 엽전을 회수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엽전통용지방인 全羅道를 비롯한 慶尙道·咸鏡道の 신화결세액은 12圓이었고, 그 외의 백동화통용지방은 8圓이었다. 이에 대항하여 일어난 것이 바로 均세운동 이었다. 요컨대, 均세운동은 엽전통용지방의 결세액을 백동화지방과 마찬가지로 신화 8圓으로 납부하자는 운동이었다.

均세운동은 晦山 邊昇基가 제기하였으며, 金星圭·宋榮淳 등의 협조하에 1907년 2월 27일 長城 鄉會에서 발단되었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均세운동은 2단계로 전개되었다. 처음의 均세운동은 여론형성 및 건의운동으로서 全羅南道の 유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각 군에 통문을 돌려 均세운동의 경위를 알리고 均民대표들을 소집하였다. 그러나 여론형성의 주도자들이 체포되자 均세운동은 全羅南道の 結民代表와 湖南學會 회원들에 의하여, 주로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度支部 뿐만 아니라 각 中央官署에 약 30여 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신문을 통하여 이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均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엽전정리가 일본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되어 강력히 추진되었던 만큼, 均세의 실시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후기의 균세운동은 납세거부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다시 말해서 결세 12圓 중 8圓만을 납부하고, 4圓은 일절 납부하지 말자는 포고문을 배포하였다. 이에 嶺·湖南地方民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드디어 균세의 실시를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균세운동은 일본의 엽전 수탈이라는 경제적 침략에 저항한 엽전통용지방민들의 항일운동이었다. 그리고 균세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엽전통용지방민들이 힘을 규합하여 저항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균세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제의 화폐정리사업이 그 목표에 도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세운동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는 줄어들지 않는다. 균세운동의 승리로 인한 항일의식의 고조는 1908년 이후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의병운동이 활성화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⁶⁶⁾ 또한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등의 言論과 湖南學會·大韓協會 등 여러 애국계몽학회의 긴밀한 협조 아래 전개되어진 점을 고려할 때, 균세운동은 당시 지방애국계몽운동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66) 均稅運動이 1908년 이후에 발생했던 義兵運動에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 줄 만한 사료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제 1기 均稅運動에 참여했던 金鎔九(金有成, <表-2> 참조) 같은 人物이 1908년 2월 奇奈衍의 뒤를 이어 의병대장이 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추측도 무리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暴徒に關スル編冊』, 光州署長報告 光秘收 제550호, 1908년 5월 26일 「匪徒首魁氏名」 기타 調査의 件 참조.